
		<h1>보도자료</h1> <p>2021. 8. 31.(화) 배포</p>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이혜윤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학력보장법안, 원격교육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 ◆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 ◆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보장법(제정)]

- ‘기초학력’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고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2】 1 참고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이번 법 제정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법률에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교육기관(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붙임2】 2 참고

[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① 교직원 및 재학생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확대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 직원,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붙임2】 3-1 참고

②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교원 신규채용 사립학교의 약 2/3(2020년 기준, 63.2%)가 시도교육청 1차 위탁채용 실시

☞ 【붙임2】 3-2 참고

③ 징계위원회 등의 공정성·실효성 확보

- 징계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하도록 한다.

-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추가한다.

-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안의 경우, 필요시 관할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붙임2】 3-3 참고

④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등 신설

-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도 적용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붙임2】 3-4 참고

⑤ 이사회 소집 시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 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누리집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 【붙임2】 3-5 참고

⑥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한다.

-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2】 3-6 참고

⑦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 【붙임2】 3-7 참고

[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등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장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을 의무화**한다.
- 또한, 법령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변경 명령이 곤란한** 경우는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붙임2】 4-1 참고

② 고교학점제 근거 마련

-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2】 4-2 참고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되,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한다.

☞ 【붙임2】 4-3 참고

[5. 고등교육법(일부개정)]

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차등적인 교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을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 수도권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학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 【붙임2】 5-1 참고

②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절차를 명시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하게 하고, 개별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사업 성과에 따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각 부처가 교육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 【붙임2】 5-2 참고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을 추가하여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였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기왕증, 과실상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붙임2】 6 참고

[7.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붙임2】 7 참고

[8.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① 직위해제 사유 추가

-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 되는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 【붙임2】 8-1 참고

② 당연퇴직 사유 추가

-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이라도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 【붙임2】 8-2 참고

③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 및 학생과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붙임2】 8-3 참고

④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명시

-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였다.

☞ 【붙임2】 8-4 참고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붙임2】 9 참고

[10. 교육기본법(일부개정)]

① 평생교육으로 용어 변경

- ‘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므로,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였다.

☞ 【붙임2】 10-1 참고

② 양성평등교육 체계화

- 학교교육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붙임2】 10-2 참고

③ 교육자치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였다.

☞ 【붙임2】 10-3 참고

④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붙임2】 10-4 참고

⑤ 생태전환교육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붙임2】 10-5 참고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한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 지적측량자료 외 일반측량자료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당구장, 만화대여업을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 【붙임2】 11 참고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기초학력보장법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조재익(6687), 이진화 서기관(651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미래교육전략팀	과장 이상범(7180), 박봉서 사무관(7181) 김미희 주무관(7185)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과장 박준성(6636), 박소하 서기관(6931) 김영현 사무관(6933) 장혜은 사무관(7092) 과장 채홍준(6369), 최지웅 서기관(6467)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과장 윤소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팀장 박진하(7080), 김민수 사무관(7083)
초·중등교육법	학교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고교교육혁신과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과장 신진용(6729), 김용준 연구사(7031) 과장 김혜림(6276), 강 현 사무관(6894) 팀장 박진하(7080), 김민수 사무관(7083)
고등교육법	대입정책과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조훈희(6368), 강소희 사무관(6365) 과장 최우성(6285), 정한미 사무관(65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정윤경(6353), 전수문 사무관(6357)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서기관(6547) 양장욱 연구관(6544)
교육공무원법	교원정책과 대학교원지원팀 국립대학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윤소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팀장 정봉출(6665), 이항섭 사무관(6927) 과장 이강국(6804), 장세은 서기관(6807) 과장 채홍준(6369), 김선빈 사무관(647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박준성(6912), 박소하 서기관(6931)
교육기본법	평생학습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지방교육재정과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혜진(6345), 남윤철 사무관(6379) 과장 장인자(7112), 양서연 사무관(7115) 팀장 박진하(7080), 김연갑 사무관(7074) 과장 최기혁(6199), 홍기욱 사무관(6529) 과장 어효진(6642), 최주현 사무관(67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붙임】 1. 8.31.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내용



붙임 1

8.31.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기초학력 보장법 강득구, 670 박홍근, 6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박찬대, 7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교육 질 제고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여 목적의 법 제정 원격교육 정의,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3	사립학교법 김철민, 7439 서동용, 1996 윤영덕, 4462 곽상도, 7048 정청래, 2129 강민정, 4391 권인숙, 5526 이탄희, 4600 권인숙, 8870 서동용, 1671 정청래, 2203 윤영덕, 2936 정청래, 7965 윤영덕, 5723 권인숙, 8794 서동용, 2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교원·직원·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실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초·중등),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준용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11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되 학부모위원 1명 이상 포함, 위원 성별비율 규정 등 관할청에 초·중등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을 위한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 추가 임원의 결격 및 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 마련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사항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사항으로 개정

순	법률명	주요내용
4	초·중등교육법 박찬대, 1941 권인숙, 9666 서동용, 2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법령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변경 명령이 곤란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 가능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5	고등교육법 김철민, 8635 김승원, 3963 박찬대, 8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화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 권고 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운영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박찬대, 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을 추가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발생 시 치료 중에도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7	학교보건법 정청래, 3815 서동용, 5680 강민정, 74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 가능하며,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가능
8	교육공무원법 권인숙, 2303 서동용, 3723 정청래, 5053 서동용, 8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된 자를 추가 교육공무원 중 교수 등이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

순	법률명	주요내용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정찬민, 9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0	교육기본법 강득구, 5595 권인숙, 7896 유기홍, 10241 정일영, 406 이탄희, 4146 강득구, 3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 수정 '남녀평등' →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위한 시책 수립 학교의 장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백혜련, 2672 정부, 5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해당 여부 분쟁 해소를 위하여 일반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의 범위 명확화

붙임 2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



1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여건 조성 등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기초학력'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 (종합계획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지원대상자 선정)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지원교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개선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조재익(6687), 이진화 서기관(6519)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p>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수준 도달 여부를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동법 제정으로 인해

-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수집·저장·가공·처리·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공공누리  	미래교육전략팀	과장 이상범(7180), 박물서 사무관(7181) 김미희 주무관(718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의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제11조(교과 및 특기·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의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교육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시스템, 「유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교육법」 제19조의2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3.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량·학습시간·진도율
2.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 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제21조(교원 원격교육 전담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 및 국제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숫자를 확대(7인→15인)하고, **교원·직원 및 재학생인 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각각 2인 이상)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 및 재학생인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적립금 운용 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박준성(6636), 김영현 사무관(6933)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5명 -----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의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

현행	개정안
	<p>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6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3-2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의 교육감 위탁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교원 신규채용 사립학교의 약 2/3 (2020년 기준, 63.2%)가 교육청 위탁채용 실시 중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되며, 시도교육청 등과의 의견수렴·협의 등을 거쳐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교육제도에 편입된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교육의 질 확보와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7헌마1038], [2013헌마692], [2011헌바14], [2007헌마1189] 등

- 사학 운영의 자유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나, 사립학교는 공교육 제도에 편입되어 공공성이 강조

- 이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교육이나 사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허용

- 동 개정 조항은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으로 위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는 해당 법인으로 응시한 수험생 중 필기시험 합격자 (통상 5배수 범위)를 대상으로 이후 수업실연,

신·구조문대비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으며,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등을 평가



- **합리적 사유** (대통령령 기준)가 있을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예시, 전북교육청 사례)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에서 ‘법인 간 공동전형’ 계획·주관하고, 교육청은 출제위원·감독요원 추천, 예산 지원 등을 실시

- 사학 인사권의 일부인 신규채용에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책무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채홍준(6369), 최지웅 서기관(6467)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생략) <u><신 설></u>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u>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 부 칙 ></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

현 행	개 정 안
	<p>일부더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4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3-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 및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사립 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인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 초·중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 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하였다.
 -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안의 경우, 필요 시 관할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추가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립 교원징계위원회 확대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초·중등 교직원 징계 재심을 위한 징계심의위원회 설치로 보다 공정한 징계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학교정책과	과장 장흥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할청의 <u>학교의 장</u> 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생략)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학교의 장 및 교직원</u>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u>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 ③ ----- ----- ----- ----- ----- -----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한다. 1.·2. (생략) 가. ~ 다. (생략)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3. (생략) <신 설>	④ ----- ----- ----- 1. ----- ----- ----- ----- <u>2명</u> ----- 2.·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u>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u>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u>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신 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 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교육감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p>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징계의결) ① (생략)</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생략)</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p>	<p>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p> <p>③ ----- ----- -----</p> <p>-----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p>




현 행	개 정 안
<p><u>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 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 </p> <p><신 설></p> <p>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p>	<p><u>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p> <p>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p>

현 행	개 정 안
<p>「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u>제62조의2</u>,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p> <p>제62조의2, 제62조의3, ----- ----- 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p> <p>----- ----- ----- ----- ----- ----- ----- ----- ----- ----- -----</p> <p><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p>

현행	개정안
	<p>일부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3조(징계의결서 송부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1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p>

3-4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당연퇴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사무직원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 인사·채용의 투명성 제고 및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박준성(6912), 장혜은 사무관(7092)
학교정책과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1.----- -----10년-----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6년-----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10년-----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0년-----

현 행	개 정 안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6년-----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10년-----
5. (생략) <신 설>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 ② (생략) <신 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p> <p><신 설></p>	<p>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공무원”-----.</p> <p>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p>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u></p> <p>③ <u>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u></p> <p>④ <u>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u>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u></p> <p><u>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u>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u> <u>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u> <u>당한 일을 하였을 때</u> 2. <u>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u> <u>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u> <u>에 적극 가담한 경우</u> 3. <u>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u> <u>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u> <u>가담한 경우</u> 4. <u>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u> <u>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u> <u>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u> <u>도가 중대한 경우</u> 5. <u>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u> <u>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u> <u>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때</u> <p>② <u>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u> <u>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u> <u>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u> <u>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u> <u>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u> <u>한 경우에만 한다.</u></p> <p><u>제72조의3(임원과의 친족 교직원</u></p>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74조(과태료) ①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70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아니한 경우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 9. (생략)	②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③ ~ ⑤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 부 칙 >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

현행	개정안
	<p>일부러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3-5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누리집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학 운영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박준성(6912), 장혜은 사무관(7092)
학교정책과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이사회 소집) ① ~ ④ (생략) <신설>	제17조(이사회 소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사학기관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학기관 종사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였다.
 - 아울러, 사학기관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청렴의무 규정 및 행동강령 제정으로 인사·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 사학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교정책과	과장 장흥재 (6506), 박민지 사무관(64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5에서 같다)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현 행	개 정 안
	<p>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p> <p>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p>

현행	개정안
<p>제73조(벌칙) (생략)</p> <p>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p><u>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p>1.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u></p> <p>2.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u></p> <p>제73조의2(벌칙)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3조와 같음)</p> <p>제73조(벌칙) ----- ----- ----- ----- ----- -----3년----- -----3천만원-----</p>

현행	개정안
<p>에 처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3-7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u>자문을</u>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생략) ⑤·⑥ (생략)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심의를</u> -----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② (생략)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u>자문을</u> 거쳐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심의를</u>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4내선번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박진하(7080), 김민수 사무관(7083)

현 행	개 정 안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제3항, 제70조의4,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중대비리 고발을 의무화하고,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즉시행정처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장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을 의무화하였다.
 -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변경 명령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학기관 경영자 등의 중대비리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교정책과	과장 장홍재(6506), 박민지 사무관(6441)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6729), 김용준 연구사(70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 략) <신 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 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 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 관할청은 외국인학교가 허 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 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 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 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교학점제)**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규정한다.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고교교육이 **학점제를 통한 미래교육으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고교교육혁신과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과장 김혜림(6276), 강현 사무관(689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학과 등) ①·② (생략)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4-3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기구화)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 (자문사항 유지)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하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이 확대되어, 사립학교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박진하(7080), 김민수 사무관(708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기능) ① <u>국립·공립 학교</u>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p> <p>1. ~ 14. (생략)</p> <p>② <u>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u></p> <p>③ (생략)</p>	<p>제32조(기능) ① <u>학교에</u>-----</p> <p>-----</p> <p>-----, <u>다</u></p> <p><u>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u></p> <p>1. ~ 1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5-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차등적인 교육기회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차등적인 교육기회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기회균형선발”)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육부장관이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

-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권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형(“지역균형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그 모집비율과 선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개정으로 인해,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등 배려대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공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발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6368), 강소희 사무관(63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 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5-2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 시 각 부처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내실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부처 간 협의 도입)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업 성과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와 교육부가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정부 차원의 투자방향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경제·사회의 급변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재정) ①·② (생략)	제7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4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정한외 사무관(6501)



현 행	개 정 안
<p>⑥ <u>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삭 제></u></p> <p>제7조의2(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조정) ① <u>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u> 2. <u>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u> 3. <u>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재정지원 배분 방향</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u> 5. <u>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u> 6. <u>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u> <p>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④ <u>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⑤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공제 대상 확대)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이 추가되도록 규정한다.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만 안전공제 가입 가능
 - (치료 중 간병료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 완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공제급여 지급제한 상향 입법)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 * [대법원 판결내용] 학교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규정(기왕증, 과실상계)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
- 동 개정으로 인해
 -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학교안전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과장 정윤경(6353), 전수문 사무관(635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	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현 행	개 정 안
급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⑥ ----- 제5항----- -----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 -----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략)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략) <신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② (생략)</p> <p><신설></p>	<p>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p>

현행	개정안
	<p>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7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운영과 전문기관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 등)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서기관(6547) 양장욱 연구관(6544)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0;"><u><신 설></u></p>	<p>제2조의3(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하

현 행	개 정 안
	<p>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p> <p>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④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8-1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되는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위해제 조항 신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 되는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윤현아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u> <u>2. 파면·해임·강등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u> <u>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 <u>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u> <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u>

현행	개정안
	<p><u>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u></p> <p>라.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u></p> <p>마. 「<u>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u></p> <p>바. <u>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u></p> <p>② <u>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③ <u>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u></p> <p>④ <u>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⑤ <u>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u></p>

현행	개정안
	<p><u>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8-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교 교수 등이 연구비 비위 등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형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의 교수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수 등이 학생 인건비 편취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징계절차 완료 전까지 직을 유지하여 소속 대학원생 등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사기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당연퇴직) (생략) <신설>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 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 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대학교원지원팀	팀장 정봉출(6665), 이항섭 사무관(6927)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8-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채홍준(6369), 김선빈 사무관(647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② (생략) <신설>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을 통해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재단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박준성(6912), 박소하 서기관(69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경비 부담) 국가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교육기본법(일부개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법 내에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본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한다.
 - ※ (해당 조문) 제10조(사회교육),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제12조(학습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21조(직업교육), 제29조(국제교육)
- 동 개정으로 인해
 -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간의 용어 통일성 확보가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혜진(6345), 남윤철 사무관(637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 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② 평생교육 ③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에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평생 교육시설 ② 평생교육시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③ (생 략)	제12조(학습자) ① 평생교육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평생교육시설

현 행	개 정 안
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 ----- ----- ----- ----- ② -----평생교육시설 ----- ----- ----- ----- ----- ③ -----평생교육시설 -----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평생교육시설----- ② ----- -----평생교육 시설----- ----- ----- -----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② ----- -----평생교육 시설-----

현 행	개 정 안
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u>사회교육</u>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 ----- --- <u>평생교육</u> ----- ----- ----- ----- -----.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u>사회교육</u>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 <u>평생교육</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국제교육) ① (생략)	제29조(국제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u>사회교육</u>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 <u>평생교육</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

현 행	개 정 안
	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10-2 교육기본법(일부개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법령(제 17조의2 제6항 및 제5항·6항)의 ‘남녀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였다.
 - ※ 「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 표현 사용
- 별개 조항으로 규정되는 ‘남녀평등교육 증진’(제17조의2)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제17조의4)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시 및 시책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다.
- 학교장이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로 학교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4내선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장인자(7112), 양서연 사무관(7115)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p>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p>
<p>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p>	<p>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p>

현 행	개 정 안
<p><u>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학교교육에서 <u>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u></p> <p>⑤ 제4항에 따른 <u>남녀평등교육심의회</u>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u>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u>양성평등</u>----- ----- ----- ----- -----<u>양성평등교육심의회</u>-----.</p> <p>⑤ -----<u>양성평등교육심의회</u>----- ----- -----.</p> <p><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p>

10-3 교육기본법(일부개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자치 실현 실질적 근거)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규정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공동 주체의 모호성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박진하(7080), 김연갑 사무관(707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신 설></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 -----.</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등이----- -----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104 교육기본법(일부개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함에 따라, 적절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② (생략) <신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신·구조문대비표

10-5 교육기본법(일부개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기후변화,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간·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 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학교체육) (생 략)	제22조의3(학교체육) (현행 제22 조의2와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어효진(6642), 최주현 사무관(6733)

신·구조문대비표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위원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쟁해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현행 지적측량자료 외에도 일반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호구역)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관광숙박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공공누리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만 연임 ----- ----- ----- ----- ----- -----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 ----- ② -----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 -----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현 행	개 정 안
<p>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 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 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p> <p>1. ~ 20. (생 략)</p> <p>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 시설 중 <u>당구장, 무도학원</u> 및 무 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 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은 제외한다)</p> <p>22. ~ 26. (생 략)</p>	<p>----- ----- ----- -----<u>제14호부터 제27호</u>----- -----<u>까지 및 제29호</u>----- ----- ----- ----- ----- ----- -----</p> <p>1. ~ 20. (현행과 같음)</p> <p>21. ----- ----- <u>무도학원</u> ----- ----- ----- ----- ----- <u>같은 법 제60조의3</u>----- ----- ----- ----- ----- -----</p> <p>22. ~ 2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7.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제 2호에 따른 숙박업 및 「<u>관광진흥법</u>」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u>숙 박시설</u>은 제외한다)</p> <p>28.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5 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u>유 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u>고등교육법</u>」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u>교육환 경보호구역</u>은 제외한다)</p> <p>29. (생 략)</p>	<p>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u>관 광진흥법</u>」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u>관광숙박업</u>----- ----- ----- ----- ----- <u>숙 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 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u> ----- -----</p> <p><삭 제></p> <p>29.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 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도위원회 위 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 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p>

현행	개정안
	<p>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 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